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5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본 조례는 이장자녀장학생 선발시 리장 정수 233명의 20%인 46명중 6할은 고등학생을, 4할은 대학생을 선발토록하고 있으나, 농촌의 고령화 추세로, 실효성이 없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할당비율을 삭제하고, 심사기준이 되는 학과성적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여 장학생 선발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□ 심사대상 성적 명시 (제2조 관련)

○ 신입생은 하급학교 졸업성적을 심사대상으로 하고, "재학 중 성적"은 직전학기 성적으로 명시하여 선발기준을 명확화.

· 고등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50이내

① 고등학교 입학생 : 중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

② 고등학교 재학생 :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

· 대학생은 재학 중 학과성적이 평점 2.5이상

③ 대학입학생 : 고등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

④ 대학재학생 :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평점 2.5이상

⑤ 복 학 생 : 휴학전 최종성적이 평점 2.5이상

□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추천비율 삭제 (제4조 제2항)

○ 최근 이장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로 대학생들이 9할 이상 추천되고 있지만 선발인원이 이장 정수의 4할로 제한되어 있고 농촌 인구 고령화로 고등학생 자녀가 적어 실효성이 없는 고등·대학생 할당비율 삭제

3. 개정조례(안) : 붙임과 같음.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.

5. 참고자료

○ 『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』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"를 "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"로 한다

제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고등학교 입학생 : 중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
2. 고등학교 재학생 :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
3. 대학입학생 : 고등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
4. 대학재학생 :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평점 2.5이상
5. 복 학 생 : 휴학전 최종성적이 평점 2.5이상
6.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

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1. 고등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, 대학생은 재학 중 학과성적이 평점 2.5이상으로 품행이 단정한 자 2.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	제2조(장학생의 자격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1. 고등학교 입학생 : 중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2. 고등학교 재학생 :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3. 대학입학생 : 고등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4. 대학재학생 :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평점 2.5이상 5. 복 학 생 : 휴학전 최종성적이 평점 2.5이상 6.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
제4조(선발) ①(생 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그 배정비율은 고등학생은 6할, 대학생은 4할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배정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4조(선발) ①(현행과 같음) ② 삭제
	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